

태국의 관세율 관련규정 및 검색방법

□ 관세율 규정 체계

-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 (Customs Tariff Decree B. E. 2530(1987))으로 규정
- 관세율령의 위임을 받아 재무부 장관은 필요시 내각의 승인과정을 거쳐 재무부고시(Notification of Ministry of Finance)로 관세율표 상에 게시된 세율의 50% 범위내에서 세율을 감경하거나 각종 특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
- 관세율령의 위임을 받아 재무부 장관은 WTO 협정세율, FTA 세율을 재무부고시로 고시
 - 한-아세안 FTA 세율은 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Re: Exemption and Reduction of Customs Duty for the ASEAN - the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rea”에서 규정

□ 관세율 검색방법

- 태국의 관세율 규정이 국왕령, 각종 재무부 고시에서 사안별로 공표하여 규정함에 따라 규정으로는 실행세율 통합검색이 어려움
- 태국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Integrated Tariff Data 사이트를 구축하여 각종 세율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음
 - Hs 코드별, 연도별, 국가별, 관세율 유형별 통합검색 가능